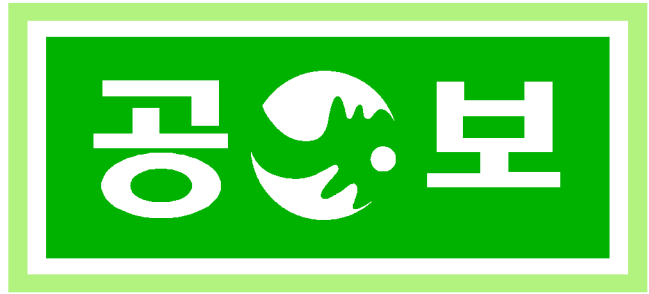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955 호 2015. 6. 30. (화)

규 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54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

훈 령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15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10

예 규


○울산광역시 북구 예규 제14호[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 18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6 행정712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합계		합계	544	412	13	38	81
		정무직	1	1			
		일반직	542	410	13	38	81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542	410	13	38	81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4	3		1	
		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32	19	2	3	8
		행정	21	12	2		7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 반 직	6급	소계	108	91	2	7	8	
		행정	56	45	2	1	8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의료기술/ 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3	3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3	3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환경	1	1				
		시설	10	10				
		방송통신	1	1				
		운전	2	2				
		보건/의료기술/ 간호	4					4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2	2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 반 직	7급	소계	167	135	3	12	17
		행정	74	55	3	1	15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4	4			
		세무	9	9			
		전산	2	2			
		사회복지	7	6			1
		사서	2	2			
		공업	1	1			
		공업/환경	2	2			
		농업	3	3			
		농업/수의	1	1			
		녹지	5	5			
		수의	1	1			
		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의료기술	3				3
		간호	4				4
		보건진료	1				1
		환경	2	2			
		시설	21	21			
		방송통신	3	3			
		운전	3	3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 반 직	8급	소계	155	110	4	12	29
		행정	64	40	2		22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4	3			1
		행정/사서	3	3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3	3			
		세무	6	6			
		진산	4	4			
		사회복지	7	2			5
		사서	3	3			
		속기	2		2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	5	2		3	
		보건/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3			3	
		간호	3			3	
		환경	3	3			
		시설	19	19			
		방송통신	2	2			
		운전	8	7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0	0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등
일 반 직	9급	소계	75	51	2	3	19
		행정	28	18	1		9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4	0			4
		세무	4	4			
		사회복지	16	10			6
		사서	2	2			
		공업	3	3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의료기술	1				1
		환경	1	1			
		시설	5	5			
		방송통신	3	3			
		운전	2			1	1
		보건운영	1				1
		별 정 직	계		1	1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2015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추진에 따른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가. 총 정원 증원 : 8명**

1) 총 계 : 536명 → 544명(증 8명)

2) 일반직 계 : 534명 → 542명(증 8명)

- 본 청 : 403명 → 410명(증 7명)

※ 6급 +3, 7급 +6, 8급 △2

- 직속기관 : 37명 → 38명(증 1명)

※ 6급 +1, 7급 △1, 9급 +1

3) 국가시책 : 5명

-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 : 행정7급 +1, 시설7급 +1(안전정보과)
- 복지담당 인력 확충 : 행정8급 +1(사회복지과)
- 사회복지직 확충대책 : 사회복지9급 +2(복지지원과)

4) 지역현안 : 3명

- 관광업무 인력 확충 : 행정/시설7급 +1(문화체육과)
-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 : 행정8급 +1(창조경제과)
- 치매예방 인력(작업치료사) 확충 : 의료기술9급 +1(보건소)

나. 직급(직렬) 조정 : 14명

1) 금연지도담당 신설에 따른 직급 상황 : 1명

- 최근 금연규제시설 확대, 담뭍값 인상 등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지원 및 치료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금연지도업무를 전담하는 담당 신설

※ 보건소-7949(2015. 3. 18.)호, 「보건소 금연지도담당 직제 신설 건의」

- 직제순서 : ①보건행정, ②예방의약, ③가족보건, ④정신보건, ⑤건강증진, ⑥금연지도

- 기존 건강증진담당에서 금연지도담당으로 업무 및 정원 분리

- 직급상황 : 의료기술7급 △1 → 보건/간호/의료기술6급 +1

○ 금연지도담당 분장사무 및 인력

담당명	분장사무	인력
금연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 건강증진 분장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강보건사업, 아토피·천식·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원 : 10명 - 일반직 : 2명(6급 1, 7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1명 : 7급 Δ1 > 6급 1(직급상향) 7급 1명 : 부서 내에서 인력 상계 - 공무직 : 2명(금연상담사 2) - 기간제 : 3명(금연상담사 1, 지도점검 2) - 기 타 : 3명(금연지도원 3)

2) 중요 업무 담당자 직급 상향 : 3명(무보직 6급)

○ 상향 기준

- 업무난이도가 높고 과급력이 큰 업무가 많은 부서
- 행정7급이 많아 무보직 6급의 순환배치가 가능한 부서

○ 무보직 6급 배치부서

- 행정8급 Δ 1 → 행정6급 +1(기획홍보실)
- 행정8급 Δ 1 → 행정6급 +1(총무과)
- 행정8급 Δ 1 → 행정6급 +1(창조경제과)

3) 소수 직렬(업무담당자) 직급 상향 : 7명

○ 8급 → 7급 : 4명

- 세무8급 Δ 1 → 세무7급 +1(세무과)
- 농업8급 Δ 1 → 농업7급 +1(농수산과)
- 방송통신8급 Δ 1 → 방송통신7급 +1(안전정보과)
- 시설8급 Δ 1 → 시설7급 +1(건축주택과)


○ 9급 → 8급 : 3명

- 사서9급 Δ 1 → 사서8급 +1(도서관과)
- 행정9급 Δ 1 → 행정/사회복지8급 +1(사회복지과)
- 행정/사회복지9급 Δ 1 → 행정/사회복지8급 +1(사회복지과)

4) 운영직군 직급(직렬) 조정 : 3명 ※ 관리운영직군 불부합 개선

- 사무운영7급 Δ 1 → 행정8급 +1(세무과)
- 기계운영8급 Δ 1 → 공업9급 +1(건설과)
- 기계운영8급 Δ 1 → 전기운영8급 +1(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북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본청 합계			412		
기획홍보실	계		24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7급	10	행정7, 행정/시설1, 시설1, 행정/임기제 행정1	
		8급	6	행정3, 행정/임기제 행정1, 행정/보건1, 전산1	
9급	1	행정1			
행정지원국	국 합계		158		
	총무과	계		35	
		정무직		1	구청장
		일반직	소계	33	
			3급	1	부이사관1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8	행정6, 운전1, 기계운영1
			7급	10	행정8, 행정/시설1, 운전1
			8급	9	행정5, 행정/임기제 행정1, 운전3
			9급	3	행정2, 공업1
		별정직	소계	1	
			6급상당	1	비서1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임기제 행정1
			7급	4	행정4
			8급	5	행정4, 행정/임기제 행정1
9급	1	행정1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일반직	계	28	
			소계	28	
			5급	1	행정1
			6급	6	행정4, 행정/시설1, 공업1
			7급	12	행정5, 행정/임기제 행정2, 행정/시설1, 시설2, 기계운영1, 전기운영/기계운영1
			8급	6	행정2, 행정/시설1, 방송통신1, 공업1, 사무운영1
9급	3	행정1, 공업/임기제 공업1, 방송통신/임기제 방송통신1			
행정지원국	도서관과	일반직	계	23	
			소계	23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행정/사서1
			7급	4	행정1, 사서2, 행정/사서1
			8급	8	사서3, 행정/사서3, 전산1, 공업1
9급	4	행정2, 사서2			
행정지원국	세무과	일반직	계	33	
			소계	33	
			5급	1	행정1
			6급	6	행정/세무4, 세무2
			7급	12	행정/세무3, 세무9
			8급	8	행정1, 행정/세무1, 세무6
9급	6	행정1, 세무4, 행정/세무1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일반직	계	24	
			소계	24	
			5급	1	시설1
			6급	4	행정2, 시설2
			7급	7	행정4, 행정/시설1, 시설2
			8급	7	행정4, 시설3
9급	5	행정4, 시설1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국 합계		120	
		계		22	
		일반직	소계	22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7급	4	행정1, 사회복지3
			8급	4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2
9급	8	행정1, 사회복지7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2
			7급	7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2, 시설1, 사무운영1
			8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9급	4	행정1, 사회복지3			
복지경제국	창조경제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7	행정5, 행정/임기제 행정1, 공업1
			8급	4	행정4
9급	1	행정1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농업/해양수산1
			6급	4	행정/농업/해양수산1, 농업2, 해양수산1
			7급	7	행정1, 농업3, 농업/수의/해양수산1, 수의1, 해양수산1
			8급	5	행정/농업1, 농업1, 농업/수의/해양수산1, 시설2
9급	2	농업1, 해양수산1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4	행정/환경1, 보건2, 환경1
			7급	8	행정1, 공업/환경2, 보건4, 환경1
			8급	7	행정1, 보건2, 환경3, 시설1
	9급	2	보건1, 환경1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환경1, 운전1
			7급	5	행정1, 행정/환경1, 환경1, 운전2
			8급	7	행정2, 행정/환경1, 운전4
	9급	1	행정1		
건설도시국	국 합계			110	
	건설과	계		24	
		일반직	소계	24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1	시설1
			6급	5	행정2, 시설2, 전기운영1
			7급	5	행정1, 시설4
			8급	9	행정3, 행정/시설1, 시설4, 전기운영1
	9급	3	행정1, 공업1, 시설1		
건설도시국	안전정보과	계		24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1
			6급	5	행정1, 행정/시설1, 전산1, 방송통신1, 사무운영1
			7급	11	행정3, 전산2, 시설2, 방송통신3, 전화상담운영1
			8급	5	행정1, 전산2, 시설1, 방송통신1
	9급	2	방송통신2		

건설도시국	도시행정과	일반직	계	16	
			소계	16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1, 시설3
			7급	4	행정1, 시설2, 시설/임기제 시설1
			8급	5	행정1, 시설3, 행정/시설1
		9급	2	시설2	
		계	13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녹지1
			6급	3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7급	6	행정1, 녹지5
			8급	2	녹지1, 농림운영1
			9급	1	녹지1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일반직	계	14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시설1, 사무운영1
			7급	4	행정3, 시설1
			8급	4	행정3, 행정/세무1
		9급	1	행정1	
		계	19		
건설도시국	건축주택과	일반직	소계	19	
			5급	1	시설1
			6급	4	행정1, 시설3
			7급	8	행정2, 시설5, 사회복지1
			8급	5	시설5
			9급	1	시설1

【별표 3】

북구 보건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보건소	계		38	
	일반직	소계	38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3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1, 의무/임기제 의무2
		6급	7	행정1, 행정/간호/의료기술1, 보건/간호/의료기술4, 보건진료1
		7급	12	행정1, 보건1, 의료기술3, 간호4, 보건/약무1, 보건/간호1, 보건진료1
		8급	12	보건1, 보건/의료기술1, 간호3, 의료기술3, 보건/임기제 보건2, 공업1, 운전1
		9급	3	의료기술1, 운전1, 보건운영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추진에 따른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 정원을 증원하고,
 나. 이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 및 직급 상향을 위해 정원배정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8명

1) 국가시책 : 5명

- 안전정보과 : 행정7급 +1, 시설7급 +1(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
- 사회복지과 : 행정8급 +1(복지담당 인력 확충)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9급 +2(사회복지직 확충대책)

2) 지역현안 : 3명

- 문화체육과 : 행정/시설7급 +1(관광업무 인력 확충)
- 창조경제과 : 행정8급 +1(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
- 보 건 소 : 의료기술9급 +1(치매예방 인력 확충)

나. 직급(직렬) 조정 : 14명

1) 급연지도담당 신설에 따른 직급 상향 : 1명

- 보 건 소 : 의료기술7급 Δ 1 \rightarrow 보건/간호/의료기술6급 +1

2) 중요 업무 담당자 직급 상향 : 3명(무보직 6급)

- 기획홍보실 : 행정8급 Δ 1 \rightarrow 행정6급 +1
- 총 무 과 : 행정8급 Δ 1 \rightarrow 행정6급 +1
- 창조경제과 : 행정8급 Δ 1 \rightarrow 행정6급 +1

3) 소수 직렬(업무담당자) 직급 상향 : 7명

가) 8급 \rightarrow 7급 : 4명

- 세 무 과 : 세무8급 Δ 1 \rightarrow 세무7급 +1
- 농수산과 : 농업8급 Δ 1 \rightarrow 농업7급 +1
- 안전정보과 : 방송통신8급 Δ 1 \rightarrow 방송통신7급 +1
- 건축주택과 : 시설8급 Δ 1 \rightarrow 시설7급 +1


나) 9급 \rightarrow 8급 : 3명

- 도서관과 : 사서9급 Δ 1 \rightarrow 사서8급 +1
- 사회복지과 : 2명
 - 행정9급 Δ 1 \rightarrow 행정/사회복지8급 +1
 - 행정/사회복지9급 Δ 1 \rightarrow 행정/사회복지8급 +1(사회복지과)

4) 운영직군 직급(직렬) 조정 : 3명 ※ 관리운영직군 불부합 개선

- 세 무 과 : 사무운영7급 Δ 1 \rightarrow 행정8급 +1
- 건 설 과 : 기계운영8급 Δ 1 \rightarrow 공업9급 +1
- 문화체육과 : 기계운영8급 Δ 1 \rightarrow 전기운영8급 +1
 - 문화체육과 : 전기운영8급 Δ 1 \rightarrow 전기운영/기계운영7급 +1
 - 건 설 과 : 전기운영/기계운영7급 Δ 1 \rightarrow 전기운영8급 +1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 예규 제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소속 직원(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구청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사회복지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설치를 적극 알려 소속직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구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 임원, 외부전문가(성희롱, 양성평등) 등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어느 한 쪽의 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⑤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성차별 금지 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구청장은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⑤ 사회복지과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을 포함한 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

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피해자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위원 기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포함한다)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 등을 저지른 행위자가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 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로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 필요
- 나.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시달

2. 주요내용

- 가.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및 내용 개선(제6조)
- 나. 성희롱 사건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강화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외부전문가도 지정 가능
 - 2차 피해 방지를 통해 피해자의 근로권 등 보장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성희롱 전문가 위촉
-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